
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(제18조제1항 관련)

1.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
2.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별 전담기구로 구성된 조직체계를 갖출 것
3. 다음 각 목에 따른 인력을 확보할 것
 - 가.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상담 업무를 수행한 자 2명 이상
 - 나.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위해·위험의 예방 업무,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의 교육 업무, 피해보전사업 관련 업무 및 통계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자 각 1명 이상
4. 삭제 <2016. 8. 12.>